

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이정인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1712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20년 8월 10일
발 의 자 : 이정인, 전병주, 박순규,
양민규, 김호평, 문병훈,
문장길, 권영희, 정진술,
김경우, 이광호, 김창원,
김화숙, 이준형, 김재형,
이상훈, 채유미, 박기재,
김경영, 정진철, 최정순,
성흠제, 우형찬 의원(23명)

1. 제안이유

-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학대는 등록장애인만이 아니라 미등록 장애인에 게도 심각한 정서적, 신체적 영향을 줄 수 있음. 그러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복지서비스나 권익옹호가 등록장애인 위주로 운영되어 온 것이 사실임.
- 장애등록이 어려운 정신질환자의 경우를 살펴보면, 현재 한국의 정신 장애인 등록은 10만 3천명 수준임. 그러나 전문가들은 미등록 장애인이 3배는 더 있을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음.
- 장애의 판정은 의학적 기준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게 되어 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의학적 판단근거에 미흡한 경우 등록장애인이 될 수 없음. 이에 사회적으로 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의학적으로 장애가 없는 모순적 상황에 놓이게 됨. 예를 들어 몇 년 전 발생한 유명 바이올리니스트에 대한 학대 사건 피해자의 경우 정신장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

하고 미등록 장애인이었음.

- 그러나 미등록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의 사각지대로 존재하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2018년부터 시행되었으나 기존의 등록 장애인 위주의 구제 경로를 크게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.
- 이에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정신질환자를 포함한 미등록 장애인들이 적절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미등록 장애인과 등록 장애인을 포괄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사업적 안정성을 높이고자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인권증진 대상 장애인을 미등록 장애인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함. (안 제2조제2호)
- 나.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의 위·수탁 기간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함. (안 제9조의3제2항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장애인복지법」,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, 「사회복지사업법」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참조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장애인에”를 “신체적·정신적 손상 또는 장애가 있는 사람에”로 한다.

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‘장애인’이라 함은 제1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사람(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)과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는 신체적·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.

제9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서 기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「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따른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장애인복지법」과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<u>장애인에</u> 대한 차별과 장애인 학대 등 인권침해를 방지하고,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생략) 2. ‘장애인’이라 함은 제1호에 따른 <u>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.</u> <p>3. ~ 6. (생략)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<u>신체적·정신적 손상 또는 장애가 있는 사람에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현행과 같음) 2. ‘장애인’이라 함은 제1호에 따른 <u>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사람(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)과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는 신체적·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.</u> 3. ~ 6. (현행과 같음)

제9조의3(운영 위탁) (생략)

<신설>

제9조의3(운영 위탁) ① (현행 제목
외의 부분과 같음)

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서 기관
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「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
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따른다.

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(목적)과 제1조(정의) 제2호의 개정을 통해 장애인의 범주에 미등록 장애인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, 개정내용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장애등록률은 94.1%로(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, 보건복지부) 추정되지만 미등록장애인과 관련된 인권침해, 차별, 학대피해 현황 파악 등이 어려워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움
 - 제9조의3(운영 위탁) 제2항의 신설에 따른 별도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3. 미첨부 사유

- 가. 의안이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(제3조제1항제2호)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

담 당 관 남승우

정책조사팀장 여차민

주 무 관 채소영

☎ 02-2180-7942

e-mail : liz1998@seoul.go.kr